

제 2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 2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 년 03 월 26 일(금) 오전 09 시 30 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14, 1 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20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황보경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의안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03월 16일 09시 ~ 2021년 3월 25일 17시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황 보 경

[붙임1] 정관변경(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 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생략) 1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p>	<p>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현행과 같음) 18. 음식점업 1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p>	<p>-사업 목적 추가</p>
<p>제 8 조(주권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생략) 2.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3.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 8 조(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현행과 같음) 2.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p>
<p>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p>	<p>제 11 조(신주의 동등배당) 1.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p>	<p>-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배당기준일 설정 후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간 이해관계상충을 방지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사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p>	
<p>제 14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2.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3.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4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p> <p>2.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p> <p>3. 회사가 제 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 1~3. (생략)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 1~3. (현행과 같음)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p>
<p>제 18 조(소집시기) 1.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 18 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p>	<p>-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p>제 43 조(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p>	<p>제 43 조(감사의 선임·해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5.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49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p> <p>1. (생략)</p> <p>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8. (생략)</p>	<p>제 49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1. (현행과 같음)</p> <p>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8. (현행과 같음)</p>	<p>-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53 조(이익배당) 1~2. (생략) 3.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생략)</p>	<p>제 53 조(이익배당) 1~2. (현행과 같음) 3.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현행과 같음)</p>	<p>-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p>
<p>부칙 1~2. (생략) 3. (시행일) 이 정관은 당사의 제 22 기 정기주주총회인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2. (현행과 같음) 3.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 43 조제 3 항·제 5 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5.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 43 조제 4 항·제 5 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부칙 신설</p>

[붙임2]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보경	1970.02.28	-	-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보경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2001.03 ~ 2008.12 ~ 2019.06 ~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입사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이사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보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설립 초기부터 약 20년간 경영지원 및 전반적인 사업기획을 담당함으로써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서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을 때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3월 26일에 개최하는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지정하는 송의진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1	제 23기(2020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사내이사 황보경 재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